■■ 진단

〈디지털 시대, 유럽의 지상파 방송〉 : 독일 공영방송 개혁과 방송분담금

이유진

프리랜서 기자, 독일 라이프치히대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석사

목차

- 1 들어가며
- 2 독일 공영방송 시스템
- 3 독일 공영방송의 방송분담금
- 4 독일 공영방송의 개혁 동향
- 5 나가며

요약

본 고는 최근 한국 사회에 논쟁이 되고 있는 공영방송의 개혁 및 수신료 논쟁과 관련해 독일의 공영방송 및 수신료 시스템을 분석하였다. 독일의 방송 시스템은 나치의 중앙집권적 미디어 통제를 경험한 후 기본권인 방송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있다. 방송자유를 위해서는 공영방송 조직 운영과 통제, 재정에 있어 국가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staatsferne)는 원칙 하에 분권적 지배구조, 정치적 영향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방송분담금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독일 공영방송은 비교적 모범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최근 거대한 조직 규모와 부패 스캔들 등으로 개혁 요구에 직면해 있다. 본고에서는 독일 공영방송과 방송분담금의 시스템과 최근 논쟁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의 공영방송 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1. 들어가며

독일 방송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기본법(Grundgesetz)에 보장된 방송 자유와 독립성이다. 미디어를 국가 선전 도구로 악용했던 나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중앙집권적 방송 시스템과 국가 통제를 철저히 배제한다. 방송의 오롯한 독립성을 위해서는 재정적 독립이 필수적이다. 독일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분담금(Rundfunkbeitrag) 형태의 독립적인 수신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최근 독일 공영방송 스캔들이 잇따르며 개혁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민들이 납부하는 방송분담금은 견고하게 지켜지고 있다.

2. 독일 공영방송 시스템

1) 독일 공영방송의 법적 기반과 특징

독일 방송 시스템은 연방제도의 특징을 명확히 반영한다. 상위 방송법격인 미디어국 가협약(Medienstaatsvertrag, MStV)은 물론 ARD국가협약과 ZDF국가협약, 도이칠란트 라디오국가협약, 방송분담금국가협약(Rundfunkbeitragsstaatsvertrag), 방송재정국가협약 (Rundfunkfinanzierungstaatsvertrag)등 방송의 존립과 운영, 재정에 관한 사항이 모두 16 개 주(州)간 합의인 국가협약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연방정부가 단일로 방송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 방송 관련법 개정을 위해서는 16개 주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한편 독일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방송판결'을 통해 기본법에 보장된 방송 자유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해석함으로 써 방송 시스템 구축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방송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하고 있다.

독일 공영방송은 제1공영방송 ARD, 제2공영방송 ZDF, 도이칠란트라디오로 이루어져 있다. ARD는 이름 자체가 독일공영방송연합(Arbeitsgemeinschaft der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의 줄임말로 지역공영방송국이 공동으로 ARD 조직과 전국구 연합 채널인 다스에어스테(Das Erste)를 운영하고 있다. 1950년 6개 지역공영방송 연합체로 설립된 ARD는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의 공영방송국이 포함되어 총 9개 지역공영방송과 해외방송인 도이체벨레가 회원사로 소속되어 있다. 이들은 독일 공영방송의 대표적인 뉴스 프로그램인 타게스샤우, 타게스테멘 등을 공동으로 제

작하고 각 지역방송국의 주요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전국적으로 송출한다. 이처럼 ARD는 독일 연방제도의 근간이 살아있는 방송 시스템으로 지역공영방송사 모두가 주인이다.

ZDF는 '제2독일방송(Zweites Deutsches Fernsehen)'의 줄임말로 전국구 단일 방송국이다. ZDF는 1960년 초 연방정부가 추진하던 '독일방송국'의 대안으로 설립됐다. 콘라드 아데나우어 당시 총리는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친정부 및 상업적 성향의 방송국을 설립하고자 했다. 그러나 독일 헌법재판소는 1961년 2월 28일 '방송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하며 국가와 거리를 두고(staatsferne) 운영되어야 한다'며 연방정부의 방송국설립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¹이 판결은 소위 '1차 방송판결'이라고 불리며 방송 자유의의 미를 해석한 대원칙으로 평가받는다. 헌재 판결 직후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 주도로 ZDF가설립되었다. ZDF도 ARD와 마찬가지로 국가협약의 형태로 설립 및 운영된다. ARD와 ZDF는 주요 채널 이외에 어린이 채널 키카(Kika), 시사 채널 포에닉스(Phoenix),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 공영방송 연합 드라이자트(3sat), 독일-프랑스 연합 아르떼(arte) 등 다양한 채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이칠란트라디오는 1994년 설립된 공영라디오방송국으로 정보, 문화, 어린이 청소년 부문에 특화된 3개의 라디오채널을 유영하고 있다.

2) 독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독일 공영방송의 최고 감독기구는 사회 각 부문의 대표자로 구성된 방송평의회 (Rundfunkrat/Fernsehrat)로 시민을 대표해 공영방송이 법적 사명을 준수하는지 감독한다. 방송평의회는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및 해임, 행정위원회(Verwaltungsrat) 위원 선출, 행정위원회에서 결의한 예산과 결산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다. 방송평의회의 규모나 대표 분야는 각각의 공영방송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적게는 32명(라디오브레덴), 많게는 75명(남서독일방송)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일 공영방송국인 ZDF를 예로 살펴보면 방송평의회 정원은 60명으로, 구성원은 정치와 언론 관계자뿐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16개 주정부에서 각 1인, 연방정부에서 2인, 소도시연합, 기독교, 가톨릭, 유대교, 무슬림, 신문협회, 기자협회, 미디어 및 영화,

^{1) 1}차 방송판결 1961,02,28, BVerfGE 12, 205-264,

포용, 예술 문화, 노동조합, 고용주연합, 상공회의소, 농업, 수공업, 복지, 스포츠, 환경, 소비자 보호, 디지털, 인터넷, 노인/가족/여성/청소년, 경제 및 학술, 음악, 이주민, 시민참여, 성소수자 등 독일 내 다양한 부문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다.

공영방송의 방송평의회에서 연방정부 및 주정부 대표 등 정치권 인사는 전체의 3분의 1로 제한되어 있다. 2 과거 ZDF 방송평의회의 정부 인사가 정원의 44%를 차지했으나, 방송 운영 및 인사에 정치적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위헌소송으로 이어졌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 감독 기관은 사회의 다양한 흐름을 반영하고 국가 및 국가 관련 구성원의 결정적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배제한 경우에만 (공영방송의) 다양성 보장과 국가와의 거리 두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며 방송평의회 내 정부 측 인사 인원을 제한했다. ARD는 지역공영방송국의 연합체인 만큼 각 지역공영방송국 사장이 순번제로 ARD 대표를 맡으며, 지역공영방송국의 방송평의회 회장이 ARD 감독기구를 구성한다.

3) 독일 공영방송의 재원

독일 공영방송의 재원은 방송수신료를 의미하는 방송분담금(Rundfunkbeitrag), 방송광고 및 기타 수입이다. 주요 재원은 방송분담금으로 공영방송 전체 수입의 약 85%를 차지한다. 독일 방송분담금은 2023년 현재 월 18.36유로다. 방송분담금은 ARD에 12.78유로, ZDF에 4.69유로, 도이칠란트라디오에 0.54유로, 민영방송 감독기관인 주미디어청에 0.35유로씩배분된다. 이에 따른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방송분담금 수입은 ARD 223억230만 유로, ZDF 78억9190만 유로, 도이칠란트라디오 9억530만 유로로, 총 310억9950만 유로로 추산된다. 3 ARD에 배분되는 방송분담금은 기본적으로 지역공영방송국에 배분되는 것으로 지역공영방송국에 배분되는 것으로 지역공영방송국이 ARD 공동 조직 및 공동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 공영방송 방송광고는 하루 평균 20분으로 제한되어있고, 오후 8시 이후 및 휴일에는 광고가 금지되어있다. 제한된 시간 규정으로 인해 광고 수입은 약 6% 정도다. 4

^{2) 14}차 방송판결 2014.03.25, BVerfG - 1 BvF 1/11 und 1 BvF 4/11. .

³⁾ KEF(2020,02,20) Zusatzinformation 4 zurPressemitteilung zum 22, Bericht: Erträge aus Rundfunkbeiträgen

⁴⁾ ARD(2023,06,23) Finanzen der ARD – Einnahmen und Ausgaben.

3. 독일 공영방송의 방송분담금

1) 방송분담금 도입과 개념

독일의 공영방송 수신료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송분담금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은 2013년 방송수수료(Rundfunkgebühren)를 방송분담금으로 변경하며 수신료 의무 납부 시스템을 도입했다. 도입 당시 방송분담금은 17.98유로로 책정되었으며, 1가구 1분담금 원칙으로 TV나 라디오 등 수신기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의무적으로 방송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방송분담금은 세금이 아니고 사용한 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반대급부도 아니다. 5 현재는 방송분담금을 공공서비스의 잠재적 사용에 대해 부과되는 기여금이라고 정의했다. 6 즉, 현재 공영방송을 실제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방송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이는 방송자유를 위한 공영방송의 재정 확보 목적도 있지만,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과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든 공영방송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외국인 등 콘텐츠 이용에 제약이 있는 시민들에게도 방송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다.

방송분담금의 새로운 의무 납부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2013년 부터 2018년까지 독일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이 제기됐다. 행정법원과 고등행정법원, 연방행정법원, 주헌법재판소, 유럽법원에 이르기까지 수십 건의 소송을 거쳐, 2018년 7월 연방헌법재판소가 방송분담금이 기본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며 지난한 법정 소송에 마침표를 찍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연대하는 독일의 방송분담금은 방송자유를 위한 기반이며, 공영방송이 다른 누구가가 아닌 시민과 사회를 위한 방송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2) 방송분담금 책정 시스템

방송분담금을 책정하는 시스템에도 방송자유를 위한 '국가와의 거리두기

⁵⁾ 최우정(2009.06.01) 독일 공영방송에서의 방송수신료의 의미, 기능 그리고 결정과정, 한국법제연구원.

⁶⁾ Bundesverfassungsgericht (2018,07,18), Vorschriften zur Erhebung desRundfunkbeitrages für die Erstwohnung und im nicht privaten Bereichverfassungsgemäß,

(staatsferne)' 원칙이 적용된다. 방송분담금은 방송재정국가협약에 따라 공영방송 재정을 감독하는 독립기구인 방송재정수요조사위원회(Kommission zur Ermittlung des Finanzbedarfs derRundfunkanstalten, KEF)의 권고에 따라 16개 주의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일차적으로 ARD, ZDF, 도이칠란트라디오가 2년에 한 번씩 공영방송 재정 운용 상황과 향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KEF에 신청한다. KEF는 공영방송이 신청한 필요 예산을 검토하고적정 방송분담금을 결정해 주정부에 권고한다. 검토 기준은 방송사가 제시한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정해진 방송 권한의 범위 내에 있는지, 도출된 예산이 경제성과 절약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되었는지, 전반적인 경제 발전 및 공공 부문 재정 상황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등을고려한다. KEF의 권고를 기초로 16개 주가 국가협약을 통해서 방송분담금을 확정한다. KEF의 권고는 법적구속력을 지닌다. 권고를 거부할 수 있지만 시민들의 과도한 부담과 같은 합당한근거를 제시해야하고, 16개 주의 만장일치로만 거부할 수 있다.

1975년 설립된 KEF는 정부의 보조 기구로 운영되다가 1994년 헌재 판결⁷ 이후 독립기구로 확대되었다. KEF 위원은 총 16명으로 주에서 각 한 명씩 임명한다. 경영감사 및 기업컨설팅 부문 3명, 경영학 및 인사/투자/경영합리화 부문 2명, 방송법 분야에 경험이 있는 판사 자격 법률가 2명, 미디어경제 및 미디어학 부문 3명, 방송기술 부문 1명, 주회계감사원 5명으로이루어져 있다. 임기는 5년이며 재임이 가능하다. KEF 위원들은 임무수행에 있어 명령이나 지시에 구속되지 않는다. KEF는 2년 단위로 공영방송사의 재정상황을 분석해 주정부에 보고한다. 적정 방송분담금 권고가 포함된 보고서와 중간 보고서를 번갈아 발행한다. 즉, 4년에 한 번씩 적정 방송분담금을 검토하는 셈이다.

ARD, ZDF, 도이칠란트라디오는 지난 4월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의 기간 동안 필요한 재정을 KEF에 신청했다.⁸ 공영방송 측은 구체적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인원 감축 등 긴축조치를 시행 중이며 기존 인플레이션 수준보다 낮게 측정했다고 설명했다. KEF는 이를 검토해 2024년 초 새로운 방송분담금을 권고함 예정이다.

^{5) 8}차 방송판결 1994,02,22, BVerfG - 1 BvL 30/88 -, Rn, 1-196,

⁶⁾ tagesschau(2023.04.28) ARD und ZDF meldenFinanzbedarf bei KEF an.

3) 방송분담금 분리 원칙

독일 방송분담금의 특징 중 하나는 미디어 정책과의 분리 원칙이다. 미디어 정책, 즉 정치의 향방에 따라서 방송분담금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2020년 12월, KEF가 권고한 방송분담금 인상을 위한 국가협약이 발효되지 못했다. 15개 주의회에서는 결의가 되었지만, 작센-안할트주에서 주의회 결의를 앞두고 기민당 소속 라이너 하젤오프(Reiner Haseloff) 주총리가 인상안을 자진 철회한 것이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공영방송의 규모가 비대하다며 공영방송을 개혁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러한 논의는 공영방송 폐지를 주장하는 극우정당 AfD가 제1야당인 작센-안할트주에서 특히 이슈가 되었다. 작센-안할트주 주의회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되어도 부결될 가능성이 컸다. 16개 주 만장일치가 필요한 방송분담금 국가협약은 결국 발효되지 못했고, 이에 ARD, ZDF, 도이칠란트라디오는 헌법재 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7월 20일 "수신료 인상안에 동의하지 않은 작센-안할트주의 의무 불이행은 기본법 5조1항에 명시된 방송 자유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합의 규정이나올 때까지 기존 인상안은 일시적으로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9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공영방송은 방송자유를 위한 기본권적인 재정 청구권이 있으며, 독일의 16개 주 정부는 공영방송의 재정 청구권을 이행해줄 의무가 있다. 작센-안할트주가 수신료 인상안 표결을 포기함으로써이러한 의무를 저버렸고, 그 결과 방송자유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방송분담금 결정에는 미디어 정치적 목적이 없어야 한다"며 "일반 방송법과 방송분담금 결정 사이의 분리 원칙은 프로그램 의무 이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위험을 배제해 방송사의 프로그램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영방송사의 구조 개혁은 미디어국가협약 등 다른 방송법제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방송분담금을 조건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헌재는 수신료 인상안을 결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결할 때도 만장일치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에 KEF의 수신료 권고에 이의가 있는 주가 있다면, 다른 주를 설득해 만장일치로 합의를 보아야 한다.

⁹⁾ Bundesverfassungsgericht (2021.08.05) Erfolgreiche Verfassungsbeschwerdenzum Ersten Medienänderungsstaatsvertrag.

3. 독일 공영방송 개혁 동향

1) 독일공영방송 스캔들

독일은 방송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영방송과 방송분담금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하지만 독일 공영방송이 실제로 법적 사명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다. 공영방송 개혁의 필요성은 정치권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ARD와 ZDF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하위 채널이 불필요하게 많고, 지역공영방송국의 프로그램에서 대동소이한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젊은 세대에 접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디지털 플랫폼을 시도하면서 공영방송 채널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을 활용해 젊은 세대에 대한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이지만, 지역공영방송 9개와 이들의 연합체인 ARD, ZDF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유사한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다.

최근 공영방송 스캔들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개혁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헌법재 판소가 방송부담금 인상을 보호한 지 불과 1년이 지난 2020년 중순, 베를린-브란덴부르크방송(rbb), 북독일방송(NDR) 등에서 잇따라 비위 및 비리 스캔들이 폭로됐다. rbb 사장은 부적절한 하청 계약, 부적절한 경비 처리 등이 드러나 2022년 8월 해고됐다. ¹⁰ 특히 사적인 고급 저녁식사, 고급 관용차 등 사장의 호화스러운 생활이 부각되면서 어렵게 지켜낸 방송분담금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었다. 공영방송사 사장의 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도 계속 제기되었다. NDR에서는 편집국 고위직과 정치인 간의 친분관계로 취재 및 보도에 정치적 압박을 받았다는 일선 기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NDR 사장 자녀가 소유한 홍보대행사가 NDR의 일감을 받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¹¹

공영방송 사장들의 부적절한 행태와 함께 방송평의회의 한계도 드러났다. 표면적으로는 다양한 인원이 모여 있지만 사실상 사회 주요 인사들의 '이너서클'로, 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방송평의회 위원들은 대부분 본업을 두고 명예직으로 근무하며 경비수당을 받는다. 파견된 조직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위원들의 근무 화경에도 차이가 있

¹⁰⁾ 미디어오늘, 이유진, 2022,09,09, 수신료 흥청망청 쓰다 해임된 공영방송 사장.

¹¹⁾ NDR (2022,12,14) In eigener Sache.

다. 엄격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기보다는 친분과 네트워크를 쌓는 조직이 될 위험성이 상존한다. 게다가 독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주민과 소수자 등 실제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2) 공영방송 개혁을 위한 움직임

독일 공영방송에 대한 비판은 이번 스캔들로 역대 최고조에 달했다. 극우정당 AfD의 요구사항이었던 공영방송 폐지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ARD와 ZDF 합병 등 강력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16개 주정부 주도의 공영방송 개혁이 가시화되었다. 각 연방주에서 미디어정책을 담당하는 주방송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공영방송 개혁을 위한 '미래위원회 (Zukunftsrat)'를 임명했다. 13 미디어, 법률, 기술 등 각 부문의 학제 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미래위원회는 공영방송 개혁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을 개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전환 및 품질 강화, 공영방송 구조 및 협력 최적화, 기여 안정성, 거버넌스 개선 등을 주제로 공영방송 개혁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독일 공영방송은 그동안 디지털화와 미디어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모두를 위한 공영방송'의 실현을 위해서다. 최근 스캔들로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거버넌스 재구성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공영방송도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rbb 사장 스캔들이 폭로된 이후 관련 사항을 가장 자세하게 보도한 곳은 rbb 편집국이었다. rbb는 자체 특별 취재팀을 구성해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 NDR 또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내-외부 감사를 거쳐 그 결과를 상세하게 공개했다. 공영방송사 스스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¹⁴

¹²⁾ Goldmann, Fabian(2022.08.03) Wen vertreten eigentlich die Rundfunkräte von ARD und ZDF?, Übermedien.

¹³⁾ StaatskanzleiRheinland-Pfalz (2023,03,09) Rundfunkkommission der Länder beruft Zukunftsrat für den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

¹⁴⁾ NDR (2023,03,01) Umfrage: Öffentlich-rechtlicher Rundfunk ja – aber reformiert,

5. 나가며

독일은 오랜 법적 논쟁을 거쳐 방송분담금 의무 납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방송자유와 독립성을 위해 사회가 합의를 통해 만든 연대시스템이다. 독일 시민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방송분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한다. 정부도 정당도 아닌 독일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공영방송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영방송이 봉사할 대상은 그 누구도 아닌 시민들이다. 시민을 위해 공영방송은 방송부담금의 가치를 증명해야한다.

heyday1127@gmail.com

참고문헌

1차 방송판결 1961.02.28. BVerfGE 12. 205-264.

8차 방송판결 1994,02,22, BVerfG - 1 BvL 30/88 -, Rn, 1-196.

14차 방송판결 2014.03.25, BVerfG - 1 BvF 1/11 und 1 BvF 4/11.

이유진(2022.09.09). 수신료 흥청망청 쓰다 해임된 공영방송 사장, 미디어오늘

최우정(2009.06.01). 독일 공영방송에서의 방송수신료의 의미, 기능 그리고 결정과정, 한국법제연구원

ARD(2023.06.23). Finanzen der ARD - Einnahmen und Ausgaben.

Baetz, Brigitte(2023,05,26), Wie kann der öffentlich-rechtliche Rundfunk reformiert werden?

Bundesverfassungsgericht(2018,07.18). Vorschriften zur Erhebung desRundfunkbeitrages für die ⟨Erstwohnung und im nicht privaten Bereichverfassungsgemäß,⟩

Bundesverfassungsgericht(2021.08.05). Erfolgreiche Verfassungsbeschwerdenzum Ersten (Medienänderungsstaatsvertrag.)

Goldmann, Fabian(2022.08.03). Wen vertreten eigentlich die Rundfunkräte von ARD und ZDF?, Übermedien.

KEF(2020.02.20), Zusatzinformation 4 zurPressemitteilung zum 22. Bericht:Erträge aus Rundfunkbeiträgen.

NDR(2022,12,14). In eigener Sache.

NDR(2023.03.01). Umfrage: Öffentlich-rechtlicher Rundfunk ja – aber reformiert.

Tagesschau(2023,04,28), ARD und ZDF meldenFinanzbedarf bei KEF an,

StaatskanzleiRheinland-Pfalz(2023,03,09). Rundfunkkommission der Länder beruft Zukunftsrat für \(\denoffentlich-rechtlichen Rundfunk. \)